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18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정태호·안도걸·강준현

이학영 · 이연희 · 이기헌

이수진 • 조계원 • 이재정

한병도・조 국・조인철

위성곤 • 박해철 • 김선민

서영석・황 희・전종덕

윤건영 · 오세희 의원
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 치 근거를 두고, 기후과학,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아동, 청년, 여성,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기후위기와 관련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직· 간접적으로 받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중앙·지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이 재고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5항 중 "노동자"를 "장애인, 노동자"로 한다.

제22조제3항 후단 중 "노동자"를 "장애인, 노동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5조(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	제15조(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		
원회의 설치) ① ~ ④ (생	원회의 설치) ① ~ ④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	5		
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			
성, <u>노동자</u> , 농어민, 중소상공	<u>장애인, 노동자</u>		
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			
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			
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			
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			
도록 하여야 한다.	,		
⑥ ~ ⑨ (생 략)	⑥ ~ ⑨ (현행과 같음)		
제22조(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	제22조(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		
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	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		
①・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지방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	③		
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			
정한다.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			
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<u>노동</u>	<u>장애</u>		
<u>자</u> , 농어민, 중소상공인, 시민사	인, 노동자		
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			
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			
여야 한다.			

④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